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764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강민국 · 김상훈 · 권성동

이헌승 • 이종욱 • 김태호

윤한홍 • 박성민 • 박덕흠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수리 요건 규정은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우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의 국제기준은 범죄자 또는 그 공모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제소유자가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관리기능을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ATF 권고사항15 주석서 3항,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 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 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상자산 이와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있음.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 ·대주주가 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타 금융업권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의 경 우 임원 또는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

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 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 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 7조제1항제1의2호 신설).
-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형법」 등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 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관련"을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으로, "선고받고"를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실형을 선고받고"로, "임원을 포함한다)"를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한다.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7

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임원·대주주 관련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임원·대주주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 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단,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등에 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
	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
	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또는 출자지분을 합
	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
	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
	<u>주</u> 주"라 한다)
	<u>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 저 (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 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 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 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세7조(신고)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

- 2. (생략)
- ② (생략)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
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
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외국환거래법」,「가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한 법률」 --- 관련 법률(이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률을 포함한다)--- 선고받거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나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기다)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안 답팔」 --- 단면 답팔(이 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4. (생략)

④ ~ ⑨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